

심 사 보 고 서

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
공유재산관리계획안

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
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1
----------	-----

2023. 4. 2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21일

-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.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채홍경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은 작물별 최적 생육환경 마련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 복합환경제어 활용기술을 개발하고, 농가에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자 스마트 온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
- 농업기술원 내 부지를 활용하여 1층 1,730㎡ 규모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정육묘 생산체계, 식물공장형 육묘실, 밀폐식 복합환경제어 시설 등을 마련하고자 함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》

- 위치 :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337, 350번지 (농업기술원 내)
- 사업기간 : 2023년
- 신축규모 : 스마트 온실 1동 (지상 1층, 연면적 1,730㎡)
 - ※ 주요시설 : 스마트 공정육묘실, LED 육묘실, 육종 온실, 복합환경제어실
실증교육장, 다목적 저장고 등
- 사업비 : 20억원(국비 10, 도비 10)
 - 시설비 1,898,400천원 - 설계비 77,500천원
 - 감리비 19,300천원 - 시설부대비 4,800천원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물별 최적 생육환경 마련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 복합환경제어 활용기술을 개발하고, 농가에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자
- 농업기술원 내 20억원을 투자하여 1층 1,730㎡ 규모의 공정육묘 생산체계, 식물공장형 육묘실, 밀폐식 복합환경제어시설 등의 스마트 온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.
-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고도화 환경제어교육장 구축은 매우 필요하며, 기후변

화 등 현안문제 극복 및 생산성·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특히,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을 통해 충북 여건에 맞는 스마트 육묘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작물 최적 생육환경 제어기술 및 노동·에너지 투입요소 최적사용 기술 습득 등을 통해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, 환경제어를 통한 신품종 조기 육성, 기능성 증진 기술개발 및 스마트팜 기술 현장보급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」

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25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4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은 작물별 최적 생육환경 마련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 복합환경제어 활용기술을 개발하고, 농가에 실습교육을 제공하고자 스마트 온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
- 농업기술원 내 부지를 활용하여 1층 1,730㎡ 규모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정육묘 생산체계, 식물공장형 육묘실, 밀폐식 복합환경제어 시설 등을 마련하고자 함
-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》

일반회계

- 위치 :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337, 350번지 (농업기술원 내)
- 사업기간 : 2023년
- 신축규모 : 스마트 온실 1동 (지상 1층, 연면적 1,730㎡)
 - ※ 주요시설 : 스마트 공정육묘실, LED 육묘실, 육종 온실, 복합환경제어실, 실증·교육장, 다목적 저장고 등
- 사업비 : 20억원(국비 10, 도비 10)
 - 시설비 1,898,400천원 - 설계비 77,500천원
 - 감리비 19,300천원 - 시설부대비 4,800천원

3.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4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	비고
	지목	소 재 지	면 적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1동	1,730	2,000,000	2023	기후변화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		신축
	기타							
1	토지							
	건물	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337,350	1,730	2,000,000	2023	기후변화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		신축
	기타							
2	토지	이하여백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4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5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계 법령 발췌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10조의2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</p> <p>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 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6천제곱미터 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5천제곱미터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
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】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 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6천제곱미터 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5천제곱미터 <p>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 공유재산</p> <p>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 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 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 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